

의안번호	제 322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월 일 (제409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옥희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년 5월 31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욱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2
----------	-----

발의연월일 : 2023년 5월 31일
발의자 : 이욱희·김현문·이정범
박병천·박용규·박재주
유상용 의원

1. 제안 이유

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하여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상 및 방법 등이 고시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이 2020년 12월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재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 교육정보화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학생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나. 교육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 하도록 규정함(제5조)
- 다. 저소득층학생에게 개인용 컴퓨터, 고장수리비, 인터넷통신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게 규정함(제6조)

- 라. 학생용컴퓨터 및 정보화지원컴퓨터에 대하여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기술적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8조)
- 마. 교육정보화 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교육정보화지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붙임
- 나.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예산과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의 효율성 증대와 정보화로 인해 발생하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안전 조치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올바른 정보 활용 능력 함양 및 정보화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학생”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 중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2. “교육정보화 지원”이란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도내 저소득층학생에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학생용컴퓨터”란 도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기숙사·도서관·직속기관 등에서 학생이 접근·이용 또는 각종 교육 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보급한 각종 컴퓨터를 말한다. 다만, 교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는 제외한다.
4. “정보화지원컴퓨터”란 제2호의 교육정보화 지원을 받는 가정에서 학생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6.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다.
7.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8. “청소년유해정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다.
9. “정보화역기능”이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사이버음란물, 청소년유해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10. “기술적 안전조치”란 정보화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설치, 망 차단 등의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저소득층학생에 대한 교육정보화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학생용 컴퓨터와 정보화지원컴퓨터에 정보화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교육정보화 지원사업과 정보화역기능 기술적 안전조치 사업에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①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예산확보 및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술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컴퓨터 등의 지원) ① 교육감은 저소득층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를 지원할 수 있다.

1. 컴퓨터를 활용하는 과제물 작성 소프트웨어
2.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방지 및 치료를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② 교육감은 제1항 이외에 저소득층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화지원컴퓨터의 고장수리비
2. 인터넷통신비

③ 교육감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저소득층학생이 두 명 이상 교육정보화 지원대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지원 대상을 예산의 범위에서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지원의 중단)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지원한 컴퓨터의 불법 판매 · 임대
2. 정보화역기능의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 · 치유 서비스의 거부
3. 정보화역기능 예방 · 해소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 활용 및 기술적 안전조치 거부

②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지원의 신청단계에서 제1항의 지원중단 조건에 대하여 해당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정보화역기능 예방) ① 교육감은 학생용컴퓨터와 정보화지원컴퓨터에서의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해야 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2. 인터넷게임 중독 · 과몰입 예방
3. 사이버음란물, 청소년유해정보 차단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학생용컴퓨터 및 정보화지원컴퓨터에 대하여 제1항의 정보화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술적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교육정보화지원 관리시스템) ①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정보화 지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1. 정보화지원 대상자 및 정보화지원컴퓨터 현황
2. 소프트웨어 지원 현황
3. 기술적 안전조치 현황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전담부서 지정) 교육감은 조례에서 정한 업무를 교육정보화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역기능 예방 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제6조와 제8조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감 및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는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정보화역기능 예방 기술적 안전조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 관련 전문기관·단체·학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령

□ 교육기본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56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정보산업을 육성하는 등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293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① 법 제6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1. 입학금 및 수업료
2. 학교급식비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5.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
- 5의2. 진로체험 등 진로관련 교육경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비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71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55조(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54조제2항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려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 1. 3.] [대통령령 제33194호, 2023. 1. 3., 일부개정]

제50조(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하 “품질성능 평가시험”이라 한다)의 대상은 상용소프트웨어 제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으로 한다.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2020. 12.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89호, 2020. 12. 24., 일부개정]

제7조(평가시험 대상 등) ① 영 제50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이란 경쟁입찰을 통한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제품 중에 구매 금액이 1억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별표3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말한다. 다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제3항의 사업의 경우에는 구매 금액이 2억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별표3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다.

[별표3]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상 소프트웨어 분야

중분류	소분류	소프트웨어 목록
시스템 SW	통신SW	논리적 망분리, 망간연계 SW
	유ти리티SW	화상회의, OCR
	시스템관리SW	시스템 관리(SMS), 네트워크 관리(NMS), 성능 측정 및 관리(APM), DB 성능 모니터링, 시스템 백업, 통합관리(EMS), 인공지능 플랫폼
	정보보호 SW	DB보안/접근제어, DB암호화, 시스템 접근제어, 개인정보 비식별화/지능형 비식별화 SW
	미들웨어 SW	WAS, WEB서버, 가상화, 검색엔진, 전사적애플리케이션통합(EAI)
개발용 SW	데이터 관리용 SW	DBMS, DB리포팅, 데이터품질관리/메타관리, ETCL, CDC, BI, DB재구성, 빅데이터 솔루션, OLAP, DW
응용 SW	기업관리 SW	전자문서관리(EDMS)
	GIS SW	GIS
	기타응용 SW	자연어 처리, 분배관리